

# 입출금이체 및 대체 약관

제정 2017년 01월 02일

개정 2018년 10월 08일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입출금이체 및 대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 ② "연계계좌"라 함은 고객계좌와 연결된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말한다.
- ③ "약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록한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한다.
- ④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약정계좌)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이체한도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약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한도 내에서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범위에서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 ⑤ "이체대체 입출금"이라 함은 회사 고객계좌와 타기관 계좌와의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것을 말한다.
  - 1. 약정계좌 이체출금 : 사이버(PC,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계좌(약정된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2. 미약정계좌 이체송금 : 사이버(PC, 모바일) 에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하지 않은 은행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3. 약정계좌 대체출금 : 사이버(PC,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계좌(약정된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4. 미약정계좌 대체출금 : 사이버(PC, 모바일) 에서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약정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5. 법인의 경우 약정계좌 이체만 가능하다.
- ⑥ "현금자동지급기(CD)출금"이라 함은 고객계좌로부터 은행 및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 ⑦ "현금자동지급기(CD)입금"이라 함은 고객계좌로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휴은행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⑧ "유가증권대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회사 및 다른 증권회사의 계좌로 유가증권의 출고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체출고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다른 회사계좌로 유가증권의 입고를 수행하는 거래로 영업점, 유선, 사이버로 처리 가능하다.
  2. 타사이체출고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계좌로 유가증권의 입고를 수행하는 거래로 영업점, 사이버로 처리 가능하다.
- ⑨ "소액이체서비스"라 함은 사전에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횟수 제한 없이 일 누적금액 100만원 미만 자금이체/대체시 일회용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간단히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 ⑩ "법인미약정이체서비스"라 함은 OTP발급 고객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약정 계좌로도 사이버이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비스의 신청(변경)내용 및 해지)

- ① 서비스의 신청(변경) 및 해지는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을 날인(또는 서명)한 약정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의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비스의 신청시에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회사 소정양식의 서면 신청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신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참고한다.
- ③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신청(변경)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④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제 2항의 서면 신청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⑤ '약정계좌 이체출금, 약정계좌대체출금, 약정계좌 유가증권 대체 거래를 위한 약정계좌의 등록 신청(변경) 및 해지는 계좌별 또는 고객별로 할 수 있으며 약정계좌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별 신청 시 동일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타기관 약정계좌는 신청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 약정계좌가 자동 적용된다.
  2. 고객별 약정에서 계좌별 약정으로 변경 시 변경 시점 등록된 약정계좌가 계속 적용되며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약정 계좌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고객별 해지 시, 해지 요청한 은행 계좌 또는 당사 타명의 계좌를 일괄 해지 처리 한다.
- ⑥ 소액이체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사이버(PC,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⑦ 법인미약정이체서비스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신청 할 수 있다.

### 제4조(서비스의 내용 및 고객확인)

- ① 고객이 제3조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명의로 금융계좌로 현금 이체/대체 거래 및 유가증권 등의 이체/대체거래를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전자서명비밀번호 및 일회용비밀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약정계좌는 사이버이체 시, 1등급한도를 자동 부여하며 보안매체 입력을 생략한다.  
단. 신시스템 이전 개설된 계좌의 경우 고객이 설정한 한도내에 이체가 가능하며, 타명의 약정계좌,

또는 법인계좌의 경우에는, 보안매체 정보 입력을 생략하지 않는다.

#### 제5조(서비스의 제한)

① 회사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
2.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4.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좌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액증명서 발급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할 때에는 '입출금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1. 순자산 총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2. 순자산 총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3. 순자산 총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제6조(예약이체)

① 고객이 사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해당일에 이체출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약이체출금약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체출금거래는 고객이 지정한 특정일에 처리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 제7조(이체출금 및 유가증권대체 접수 신청시의 본인확인)

① 고객의 이체대체출금 및 유가증권이체대체 신청 접수시 본인확인은 계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 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8조(기록유지 등)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기록,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전화에 의한 이체출금의 처리)

전화에 의한 약정계좌로의 이체대체출금 신청 접수 시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체업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이체출금 시간 및 한도)

이체출금 한도 및 처리가능시간은 회사가 정한 범위<별첨2>내로 한다.

### 제11조(이체입금 방법)

고객은 제휴은행의 연계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 또는 회사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 이체입금 할 수 있다.

### 제12조(현금자동지급기 입·출금)

- ① 고객은 은행 및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출금할 수 있으며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할 수 있다.
- ②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출금한도는 각 금융기관 및 자동화기기 전문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 출금한도에 따른다.
- ③ 모바일통장의 경우, 제휴된 VAN사 ATM 출금이 가능하며 한도는 별첨1)를 따른다

###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거래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을 따른다.
- ② 거래내용의 서면 발급은 당사의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
- ③ 회사 영업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14조(사고변경사항 신고)

- ① 고객이 접근매체를 분실, 멸실 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여야한다. 단,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로 신고할수 있다.
- ② 고객은 신고한 거래인감 등,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한다.
- ③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서 정한때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합의관할)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6조(이의신청)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약관의 변경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18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1〉

"회사가 정한 최대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안매체 발급 수단에 따라 이체한도를 자동 부여하며(신시스템 오픈 이후 계좌개설 건만 해당), 고객이 별도 신청할 수도 있다.

- 보안매체별 이체등급 한도 참고

\*입금계좌를 지정한 계좌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고객이 설정한 이체한도 (고객단위 당일 누적 100만원 이하)내에서 이체가능

- 이체한도표

### [사이버]

단위(원)

| 구분 | 등급          | 거래이용수단                         | 인터넷      |          | ARS  |          |
|----|-------------|--------------------------------|----------|----------|------|----------|
|    |             |                                | 1 회      | 1 일      | 1 회  | 1 일      |
| 개인 | 1 등급 & 약정계좌 | OTP 또는 보안카드+ARS 인증 + 공인인증서     | 1 억      | 5 억      | 5 천만 | 2 억 5 천만 |
|    | 2 등급        | 보안카드 + SMS 인증 + 공인인증서          | 5 천만     | 2 억 5 천만 | 1 천만 | 5 천만     |
|    | 3 등급        | 보안카드 / 모바일 OTP +공인인증서          | 1 천만     | 5 천만     | 1 천만 | 5 천만     |
| 법인 | 약정계좌        |                                | 10 억     | 50 억     | 1 억  | 5 억      |
|    | 미약정계좌       | 미신청 / 신청 (OTP +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설정) | 0 / 5 천만 | 0 / 5 천만 |      |          |

### [유선]

### [ATM 출금]

| 구분 | 기본한도  | 구분              | ATM 출금   |      | ATM 이체 |      |
|----|-------|-----------------|----------|------|--------|------|
|    |       |                 | 1 회      | 1 일  | 1 회    | 1 일  |
| 개인 | 10 억  | 일반한도            | 1 백만     | 6 백만 | 6 백만   | 3 천만 |
| 법인 | 100 억 | 장기미사용 ATM 한도 제한 | 70 만     | 70 만 | 70 만   | 70 만 |
|    |       | 모바일통장           | 1 일 50 만 |      |        |      |

〈별첨2〉

제10조 “ 회사가 정한 처리가능시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거래구분     | 매체                         | 가능시간                                                                                           |
|----------|----------------------------|------------------------------------------------------------------------------------------------|
| 사이버 이체출금 | 인터넷한도(HTS, 홈페이지, 모바일), ARS | <p>*24/365 시행</p> <p>-23:30~00:30은 정산작업등으로 인해 거래 불가</p> <p>(단, 회사정책에 따라 거래가능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p> |